

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

1.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

목적 :

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(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소규모요양시설,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)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,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,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
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

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.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-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시설 내·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
-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-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,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
- 시설 입·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
1. 신체적 학대

행위	증상	학대 세부내용 분류
- 때린다. - 세게 친다. - 고집는다. - 물건을 집어 던진다. - 흥기로 위협한다. - 강하게 누른다. - 찌른다. - 강하게 흔든다. - 강하게 붙잡는다. - 난폭하게 다룬다. - 무리하게 먹인다. - 신체 구속한다. - 감금(가둠)한다. -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. -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. -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.	-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-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-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(잘린 상처, 찢린 상처, 생채기, 출혈, 골절 등) - 신체부상 (얼굴, 목, 가슴, 복부, 골반, 팔, 다리) -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(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) 상처 -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- 화상(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) -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- 이상한 체중 감소 -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	☒ 외상없음 ☒ 부종 ☒ 멍듬 ☒ 할퀴 ☒ 고집힘 ☒ 물어뜯김 ☒ 찢김 ☒ 경미한 출혈 ☒ 머리카락 뽑힘 ☒ 목줄린 흔적 ☒ 묶은 흔적 ☒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☒ 감금 ☒ 뺨(접질림) ☒ 골절 ☒ 탈골 ☒ 인대손상 ☒ 고막파열 ☒ 화상 ☒ 복부출혈 ☒ 호흡곤란 ☒ 두개골 골절 ☒ 경뇌막 혈종 ☒ 신체떨림(수전증) ☒ 뇌손상 ☒ 의식장해 ☒ 뇌사 ☒ 사망 ☒ 기타

2. 언어·정서적 학대

구체적 행위	나타나는 징후	학대 세부내용 분류
- 말로 욕을 퍼붓는다. -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. -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. - 말로 (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) 협박한다. -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. -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. -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. - 유아처럼 다룬다 -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- 외출시키지 않는다 - 노인을 보지 않는다 -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-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-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- 창피를 준다 -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-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-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.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-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	-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- 질문을 해도 '네' '아니오'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- 표정이 없다 - 정서상태 : 우울, 공포, 혼돈상태, 부정, 분노 흥분, 수동성 - 무기력하다 -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- 고개를 숙이고 있다 - 웃는 모습이 아니다 - 눈물을 머금다, 운다,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-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-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- 눈이 싹 들어가 있다 -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-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-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	☒ 무관심 ☒ 소리 지름 ☒ 비하된 언어 ☒ 이유 없는 짜증과 화 ☒ 심한욕설 ☒ 대꾸안함 ☒ 무시 ☒ 모멸감 ☒ 고의적 따돌림 ☒ 언어적 협박 및 위협 ☒ 흥기로 위협 ☒ 과대한 요구 ☒ 생활기구 제한 ☒ 기물파손 ☒ 물건던짐 ☒ 사회적 활동 제한 ☒ 사용 공간 제한 ☒ 생활기구 사용 제한 ☒ 쫓아냄 ☒ 집 못 들어오게 함 ☒ 나가지 못하게 함 ☒ 기타

3. 성적 학대

구체적 행위	나타나는 징후	학대 세부내용 분류
▪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▪ 성 관련 언어, 시각적 자료,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▪ 폭행한 후 강제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▪ 물건이나 흥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폭행 하는 것 ▪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▪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(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, 탈의실, 화장실 개방 등)	▪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▪ 속옷이 찢어짐 ▪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▪ 성병 ▪ 우울, 사회관계의 단절 ▪ 수면장애 ▪ 분노 또는 수치심	☒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☒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☒ 성희롱 ☒ 성추행 ☒ 성폭행 ☒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☒ 기타

4. 재정적 학대

구체적 행위	나타나는 징후	학대 세부내용 분류
-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. -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. -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(재산)을 사고판다, 빌린다 -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. -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. - 노인의 소득(연금, 임대료, 수당 등)을 가로채거나, 대리권을 악용한다 -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. -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. (돈을 훔친다, 돈을 악용 한다,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) -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. -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. -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.	-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-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-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. -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-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-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-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	☒ 인감도용 ☒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☒ 강제적인 명의변경 ☒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의무 불이행 ☒ 은행계좌 무단 인출 ☒ 현금갈취 ☒ 동산갈취 ☒ 부동산갈취 ☒ 재산권사용제한 (예. 근저당) ☒ 유언장 허위 작성 ☒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☒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☒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☒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☒ 기타

5. 방임

구체적 행위	나타나는 징후	학대 세부내용 분류
▪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▪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▪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(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) ▪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(옷갈아입기, 기저귀교환 손톱깎기, 신발, 목욕등) ▪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(안경, 의치, 보청기 등) ▪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▪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▪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▪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	▪ 오물, 대소변 냄새,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▪ 머리, 수염, 손톱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▪ 욕창이 있다. ▪ 땀띠, 염증, 이(기생충)가 있다 ▪ 악취가 난다. ▪ 의치, 보청기, 안경 등이 없거나부수어져 있다 ▪ 식사를 거르고 있다 ▪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▪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▪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. ▪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. ▪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▪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. ▪ 전기, 가스, 전화,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	☑ 의료적방임 (치료받아야 하는 상황) ☑ 보장기구(보청기, 당뇨 체크기구등) 제공거부 ☑ 필수생활비, 생계비 지원단절 ☑ 비위생 거주 환경 ☑ 개인위생 방치(와상,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) ☑ 난방 단절 ☑ 전기, 가스, 수도 단절 ☑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☑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☑ 영양실조 ☑ 탈수상태 ☑ 연락두절 ☑ 왕래두절(1년이상) ☑ 노인의 배회 ☑ 신변 위험 상태 방치 ☑ 죽게 내버려 둠 ☑ 가출 후 찾지 않음 ☑ 기타

6. 자기방임

구체적 행위	나타나는 징후	학대 세부내용 분류
-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, 건강관리,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. - 자기의 신변청결, 건강관리,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.	-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-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-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	☒ 의도적으로 신변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☒ 의도적으로 식사거부 ☒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☒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☒ 자해 ☒ 자살기도 ☒ 사망 ☒ 기타

7. 유기

구체적 행위	나타나는 징후	학대 세부내용 분류
▪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▪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. ▪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. ▪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강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	▪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. ▪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. ▪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, 주거지를 옮기거나, 이민을 떠났다. ▪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가 없다.	☒ 노인을 길, 시설, 낯선 장소에 버림 ☒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☒ 사망 ☒ 기타

기관의 역할과 임무

- 노인복지시설

-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,
-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,
- 학대행위자의 예방, 치료계획을 실시,
-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,
-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,
-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

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

-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,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.
-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,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,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.
-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.
-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,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.
-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